

문서번호	도시철도설계부-3091	★주무관	도시철도설계부장	도시철도국장	도시기반시설본부장
보존기간	3년				
결재일자	2010.04.09.				
공개여부	공개				
방침번호	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방침 제(145)호	협 조	시설안전국장 안전팀장		



창의 시정
서울을 움직이는 힘

산업재해 관리 개선방안 보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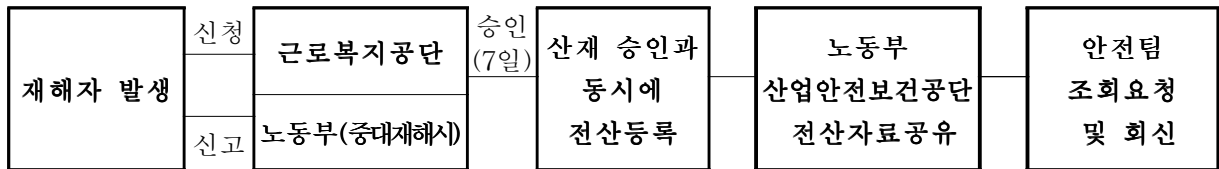


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
(도시철도설계부)

공사장 산업재해 관리 개선방안 보고

본부 건설공사장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재해발생 시 보고지연 등으로 실시간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즉시 보고체계를 유지되도록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.

■ 재해 관리 흐름도



- 본부 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조사 후 승인을하고 전산에 등록하여,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재해현황을 관리하고
- 본부에서는 공단의 재해현황을 제공받아 재해율을 관리

■ 재해현황 파악에 따른 문제점

- 현재의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한 재해현황 파악에는 산업재해 승인절차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이후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산재발생 즉시 파악이 어려움이 있으며
-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도 본부에 미 보고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자료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기간(평균 1.5개월 정도)이 소요되어 사고원인 조사 및 횡단전개를 통한 안전관리 실효성 확보가 곤란함

■ 개선방안

- 현장에서 재해 발생시 현장 책임감리원은 따로붙임 보고양식에 의거 담당부서 및 안전팀에 의거 즉시 보고체계를 유지토록 지시
 - 주요재해에 대하여는 안전팀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, 필요시 유사 재해 예방을 위해 전 현장에 횡단전개 실시
 - 재해에 대한 보고지연시 일반 재해인 경우 1회에 한하여 경고조치, 2회 위반시 및 중대재해 보고 지연시에는 『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4(부실측정)』의 규정에 의거 부실벌점 부과 조치

■ 행정사항

- 본 방침을 각부서에 통보하여 현장에서 재해 발생시 즉시 보고체계가 이루어 지도록 시행하고, 각 공사장 감리단장에게도 재해발생 즉시 보고하도록 본부장 지시사항으로 하달 하고자 합니다.

따로붙임 : 1. 재해 발생현황 보고양식 1부. 끝.